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794호

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(국토교통부령 제934호)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(안 제2조~제4조)

- (정의) 공사대금, 하도급대금, 자재·장비대금 등 주요용어 규정

- (적용범위) 공공 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대금 구분 청구·지급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·계약한 건설공사에 적용
- (이용확대) 전자조달시스템등 의무 적용 외 공사에도 발주자, (하)수급인의 시스템 이용 공사대금 청구·지급 노력 명시

나. 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및 이용 안내 (안 제5조~제6조)

- (기능) 공사대금 유용 방지를 위한 출금 제한 기능,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위한 지원 기능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 기능 명시*
 - *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공사대금 보호
- 주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지체없이 기능 개선
- (안내) 전자조달시스템등 활용 시 입찰공고서,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(하)수급인에게 사전 안내
 - 사전 안내 미흡 시 시스템 이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) 예방을 위해 (하)수급인에게 안내 요청 권한 부여

다.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방법 및 절차 (안 제7조~제11조)

- 지급항목·대상자별* 내역을 첨부하여 대금 청구서 작성(제7조)
 - * (항목) 수급인 몫, 하수급인 몫, 하도급대금, 자재장비대금, 임금
(지급대상자) 수급인, 하수급인, 자재·장비업자, 건설근로자
- 공사대금 구분 청구 시, 공사일지·출역현황, 자재·장비 제작·납품 현황 등 대금 청구의 적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

-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,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선지급금을 구분 청구하도록 하여 (하)수급인의 몫으로 일괄청구 관행 방지
- 자재·장비업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등 임금의 구분청구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대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*(제8조)
 - * 자재·장비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(하)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
- 임금 구분 청구 예외*를 명시하고, 전자카드 근로내역을 연계한 임금 내역 작성을 통한 편의 제고 및 임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(제9조)
 - * 직접노무비 건설근로자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경우, 직접노무비 근로자라도 상용 근로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등
- (하)수급인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이체할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를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도록 규정(제10조)
-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(하)수급인이 이를 보완*하여 재청구하도록 조치(제11조)
 - *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 사유 제출 필요

라. 공사대금 구분 지급 방법 및 절차 (안 제12조~제13조)

- 공사대금 지급 기한*을 규정하고, 자재·장비대금과 임금은 약정계좌를 거쳐 일반계좌로 지급토록 하여 공사대금 유용 방지(제12조)
 - * (발주자→수급인) 기성/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
((하)수급인→하수급인, 근로자 등)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(임금은 5일)
- 근로자가 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 계좌 또는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, 그 사유와 동의·확인서 제출

-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
(하)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(대리지급 금지)
- 하도급대금, 자재·장비대금에 관한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 시 이를 입찰
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토록 규정(제13조)
-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합의 노력 적시

마. 공사대금의 선지급(안 제14조)

-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
(하)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
- 하도급대금 선지급의 경우, 하수급인의 약정 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,
하수급인은 자재·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

바. 선급금의 청구 및 지급, 적정 관리(안 제15조~제16조)

- 선급금 지급 기한* 규정 및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등 관리 강화를
위해 선급금 청구 시 사용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(제15조)

* (발주자→수급인) 선급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

(수급인→하수급인)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
- 선급금 산정 시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*를 제외토록 하고, 발주자의
선급금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·감독 명시(제16조)

*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대가(기본급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공정건설추진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
- 전자우편: yaho0920@korea.kr
- 팩스: 044-201-5547

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(☎ 044-201-357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